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63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검토	2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7
3. 개별 법률 검토	8
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8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
다. 농약관리법	17
라. 농업협동조합법	20
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
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9
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아. 산림조합법	35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0
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43
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46
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50
파. 한국마사회법	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동 법률안은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 주요내용 】

소관 부처	법안명	정비 대상	개정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9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결격사유	파산선고 삭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조건의 결격사유	
	농약관리법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농업협동조합법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청의 결격사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체 임원 등의 결격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기관·공시기관의 지정 취소	
	한국마사회법	마주 등록	
산림청 (4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생산업의 등록 결격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결격사유	
	산림조합법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통해 일반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다만, 결격사유를 과하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 규정하되,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파산이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 상실¹⁾에 기인하고,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신용훼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는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임²⁾.

1) 파산선고란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로 채권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고하는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및 제305조)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소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같은 법 제382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같은 법 제329조).

2)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p.371)

【 파산절차 개요 】

구분	절 차	내 용
1	파산 신청서 제출 (제294조)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 채무의 원인, 채무액의 과소 등 무관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 (제305조)	파산선고를 받으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금지되며,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가 될 수 없음
3	면책신청 (제556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법원에 면책신청
4	면책심문 및 면책결정 (제558조, 제564조 및 제566조)	법원은 심문을 통해 성실하나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 취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변제책임 면제(조세, 벌금 등 제외)
5	복권 (제574조, 제575조)	① 법원의 <u>면책결정</u> 이 확정되거나, ②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인한 유죄판결 없이 <u>10년</u> 이 경과한 경우 ③ 면책이 불허된 경우라도 변제 등으로 <u>채무가 모두 소멸</u> 한 경우 ⇒ 파산선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 소멸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구성

그러나,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후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³⁾는 지적이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3)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 등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에 개별법상 자격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취업 등에서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결격사유를 축소함에 따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한편, 결격사유의 도입 취지가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는 입법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되 결격사유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형량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해당 임용,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⁴⁾가 있는바,

4)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p.37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개정 대상 법률 각각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⁵⁾은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법제이론과 실제」⁶⁾에서는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이 가능하도록 재산상의 신용과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 등의 결격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6)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p.371)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3365호, 2021. 11. 18. 회부)은 2022. 04. 26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으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3. 개별 법률 검토

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 및 투자심사 인력의 역할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출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정책펀드 운용의 공익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⁷⁾으로, 2010년부터 2024년 8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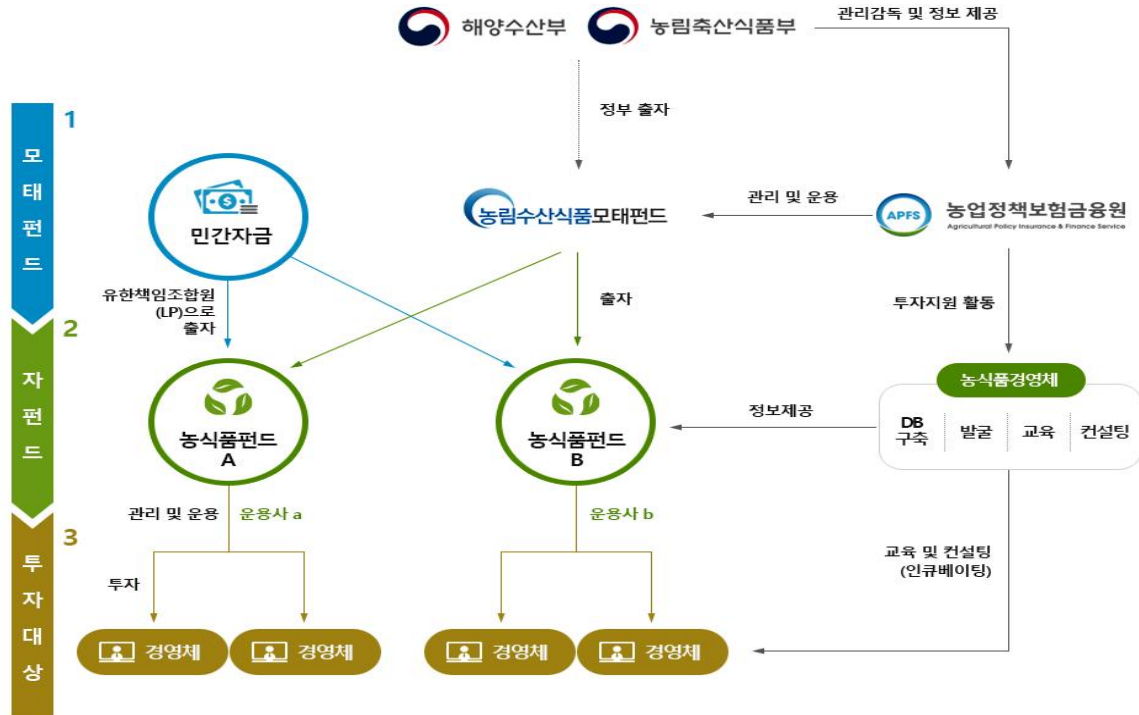
7)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까지 133개의 농식품투자조합이 2조 1,872억원을 운용하였음⁸⁾.

【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구조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2024. 10. 31.) 제출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2024. 10. 31.) 제출

개정안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선고자에게 초래되는 직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농식품투자조합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특히 투자 업무의 경우 민간의 투자심리가 업무 성과에 직결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우 민간투자자⁹⁾의 신뢰도 저하로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목적¹⁰⁾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에서 각각 출자받아 결성됨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의 결정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3호·제25조제3항제1호·제36조제2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2. (생략)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5. (생략) ④ ~ ⑥ (생략)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 6. (생략) ④ ~ ⑦ (생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2. (생략)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현 행	개 정 안
<u>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견인이 없을 것</u> 4. 5. (생 략) ③ · ④ (생 략)	<u>견인이 없을 것</u> 4.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
재무 건전성 악화 시 그 피해가 출하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경
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용곤란하다는 의
견 제출

3) 검토 의견

① 도매시장법인, ② 중도매인, ③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 도매시
장의 유통 주체로서, 생산자(출하자)와 소매자 간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음.

【 도매시장 법인 등 역할 】

①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 (수집 기능)

② 중 도 매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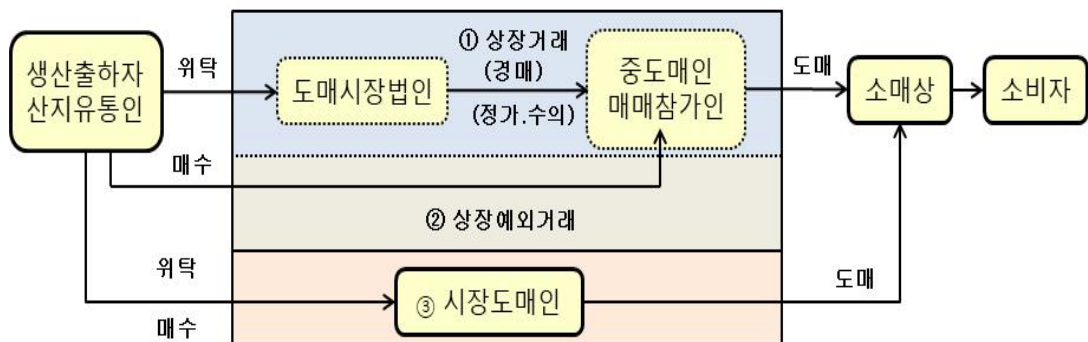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경매에 참여, 매수한 후 소매상인(유통·가공 업체) 등에 판매(분산 기능)

③ 시장도매인

- 생산·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수집·분산 기능 동시 수행)

【 도매시장 거래구조 】

< 공영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2024. 10. 31.) 제출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선고자에게 초래되는 직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동 법에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고
있는 것은 출하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는 등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의 업무
특성상 거래관계 신용이나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유통 주체에 대하여 거래 실적 및 재무 건전성을 평가¹¹⁾
하고, 필요한 경우에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¹²⁾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의 거래상 신용 및 재무 건전성을 점검·확인하
고 있음.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를 받을 경우 도매시장 유통 주체에게 필요한 거래상 신용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 재무 건전성 악화 시 그 피해가 출하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농약관리법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4조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제4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은 영업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권으로 영업등록이 취소되나, 개정되면 등록기준 보완 명령 후 명령 위반시 고발되어 파산선고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제조·수입업자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의 회수·폐기를 못 할 경우 불법농약이 유통되고, 보관·판매중인 판매업자까지 고발 및 영업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②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약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제조업자 등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농약관리법」¹³⁾ 및 「농약관리법 시행규칙」¹⁴⁾은 농약 제조업·원

13)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제조업의 등록기준

1) 실험실

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추었. 다만,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분야로 지정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창고

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관창고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

다) 환기구: 보관창고의 규모에 맞는 벤틸레이터(Ventilator) 등 환기시설의 설치

3) 제조 시설 및 장비

가) 원제처리장치, 제품혼합조, 저장조, 포장시설 등 제제형태별로 농약등을 제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추었. 다만, 제제형태별로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제조·수입업 및 판매업¹⁵⁾의 등록 기준으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농약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인
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자만 위험한 화학물질인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파
산선고자에게 초래되는 직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효율
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영업
등록 시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시설·장비·인력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
도 사실상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결격사유에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를 삭제 시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영업 중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보관중인 농약
이 다량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주민 등의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는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하 생략)

15) 현재(24. 10.) 농약 제조업자 72개소, 원제업자 32개소, 수입업자 116개소, 판매업자 5,683개소

라. 농업협동조합법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조합원의 파산을 삭제하고,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9조제2항제3호·제49조제1항제3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탈퇴) ① (생략)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2. (생략) 3. 파산한 경우 4. 5. (생략) ③ (생략)	제29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12. (생략) ②·③ (생략)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조합원) 파산한 조합원 당연탈퇴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 유지 시 파탄에 직면한 조합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 보장이 가능해지는 등 개정안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 회생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출

(임원)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가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조합 임원으로 임명 시 투명한 업무수행 기대가 곤란하므로,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② 농협중앙회

파산한 조합원의 당연탈퇴 규정 삭제 시 조합원으로서 조합 사업 이용 의무 등은 지지 않은 상태로 혜택만 누리게 되어 선량한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의 탈퇴 사유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음.

조합원의 탈퇴 사유는 지역축협¹⁶⁾, 품목조합¹⁷⁾, 조합공동사업법인¹⁸⁾이, 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역축협,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¹⁹⁾까지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 효과는 지역농협 외에도 지역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16)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9)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됨.

개정안은 지역농협 조합원의 탈퇴 사유 및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각각 ‘파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자에게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먼저, 지역농협 조합원의 탈퇴 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기본이 되는 자본인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바²⁰⁾, 채무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조합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²¹⁾ 조합원의 출자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조합원의 출자금이 압류·추심되면 채무자는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출자금 감소로 조합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음.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²²⁾ 협동조합 원칙」 중 제3원칙으

20)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1)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바, 출자금 없이 조합원을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 사유에서 파산자 삭제 시 파산자와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합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제·신용사업 등을 수행²³⁾하는 지역농협 임원의 행위는 조합원 등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경제·재무적으로 책임 운영이 가능한 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가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조합 임원으로 임명 시 투명한 업무수행에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농협이 농업인과 일반 국민²⁴⁾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

22)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

○구분: 국제 연합체

○설립일: 1895년

○설립목적: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증진

○주요활동/업무: 협동조합사업 보급, 조합운동, 총회 개최

○소재지: 벨기에 브뤼셀

○규모: 109개국, 310여 개 단체

23) 조합 자산 처분 등 운용·관리, 간부직원 임면, 업무 규정의 제·개정, 사업 집행 방침 결정 등

어, 파산선고보다 엄격하게 채무 상황의 연체²⁵⁾까지도 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5)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황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2조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5. (생략)	제12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시 신청자는 최근 2년간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상태의 안정성 및 사업 계획의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도 인증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농촌융복합산업은²⁶⁾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연계하는 산업”으로 6차산업으로 불리고, 2024년 9월 현재 2,607 개소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되어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²⁷⁾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신청 시 신청자는 재무제표²⁸⁾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본금²⁹⁾

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7) 「농촌융합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28)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재무적 사항을 검토 후 경영 상태의 안정성 및 사업 계획의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의 파산과 관련 없는 직역에서의 파산자의 진입을 막아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저해하는 측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도 사실상 영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③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2. 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3.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목재생산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략)	제25조(결격사유) ----- ----- -----. -----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산림청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개정안은 목재생산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의 파산과 무관한 직역으로의 파산자 진입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통한 회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³⁰⁾, 같은 법 시행령³¹⁾은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m ³ 이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이하 생략)

3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런데,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일정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도 사실상 영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및 제2호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략)	제16조(결격사유) ----- ----- -----. <삭 제> 2. ----- -----, <단서 삭제> 제> 3.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예외 경우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의 파산과 무관한 직역으로의 파산자 진입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통한 회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³²⁾, 같은 법 시행령³³⁾은 산림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으로 기술수준, 자본금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춘 것

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만원 이상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3.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그런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일정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도 사실상 영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 산림조합법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지역 산림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조합원의 파산을 삭제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39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생 략)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2. (생 략) 3. <u>파산하였을 때</u> 4. 5. (생 략) ③ (생 략)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2. (생 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4. ~ 13. (생 략) ② ③ (생 략)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1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산림청

(조합원) 조합의 자안성을 부여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를 조합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 회생자에게 기회를 주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파산자의 당연탈퇴 삭제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출

(임원) 산림조합의 책임·건전경영을 위해 파산뿐만 아니라 채무 연체 시에도 임원 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현행 「산림조합법」(제2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은 각각 지역 산림 조합원의 탈퇴 사유와 지역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산림조합중앙회³⁴⁾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4) 「산림조합법」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4항·제5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산림조합법」(제2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 효과는 지역 산림조합 외에도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개정안은 지역 산림조합원의 탈퇴 사유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각각 ‘파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자에게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먼저, 산림조합원의 탈퇴 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기본이 되는 자본인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바³⁵⁾,

채무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조합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³⁶⁾ 조합원의 출자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조합원의 출자금이 압류·추심되면 채무자는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다른 조합원과의 형

35) 「산림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36)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출자금 감소로 조합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음.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³⁷⁾ 협동조합 원칙」 중 제3원칙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바, 출자금 없이 조합원을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 사유에서 파산자 삭제 시 파산자와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합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제·신용사업 등을 수행³⁸⁾하는 산림조합 임원의 행위는 조합원 등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경제적·재무적 책임이 가능한 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가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조합 임원으로 임명 시 투명한 업무수행에 우려

37)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

○구분: 국제 연합체

○설립일: 1895년

○설립목적: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증진

○주요활동/업무: 협동조합사업 보급, 조합운동, 총회 개최

○소재지: 벨기에 브뤼셀

○규모: 109개국, 310여 개 단체

38) 조합 자산 처분 등 운용·관리, 간부직원 임면, 업무 규정의 제·개정, 사업 집행 방침 결정 등

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조합이 임업인과 일반 국민³⁹⁾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파산선고보다 엄격하게 채무 상환의 연체⁴⁰⁾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9) 「산림조합법」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0) 「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자. 석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석채채취업등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채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격사유) ----- ----- -----. -----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산림청

석채채취업 등록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개정안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의 파산과 무관한 직역에서의 파산자 진입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통한 회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⁴¹⁾, 같은 법 시행령⁴²⁾은 석재채취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석재채취업등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4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4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별표 1] 석채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채채취업(이하 생략)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일 것	버킷(bucket: 석채 등을 퍼 올리는 통) 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석채채취업의 구분에 따라 장비별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 1명 이상일 것
			나. 굴착기 1대 이상일 것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일 것	
			다.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 1대 이상일 것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일 것	
			라. 와이어소(Wire-saw: 줄톱) 1대 이상일 것	절단 용량이 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런데, 석채채취업등의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일정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도 사실상 영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0조제5항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싸움소 주인으로 활동 시 소싸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불이 어려

위 조교사 등의 피해 우려, 소싸움 운영의 안정성 저해 등 문제 발생 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⁴³⁾”로, 농가로부터 싸움소를 구매하여 조교사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청도공영사업공사⁴⁴⁾에서 공고하는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켜 경기 결과에 따라 책정된 상금을 수령하고 있음.

개정안은 싸움소 주인의 등록 요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선고자에게 초래되는 직업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싸움소 주인의 주요한 역할은 싸움소 매매, 싸움소 육성·관리 등으로, 이러한 싸움소 주인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필수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경기 시행규정⁴⁵⁾을 살펴보면, ① 제72조제1항에서 조교사가 싸움소주인

4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4)청도군이 전액 출자하여 2003년 10월 1일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된 싸움소 주인은 334명, 조교사는 19명, 싸움소는 655두

과 응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제72조제2항에서 조교사와 응원계약을 체결하고 소싸움 승리 시 싸움소 주인은 조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싸움소 주인의 재무적 안정성이 소싸움 경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임.

또한, 파산으로 인하여 개인 재무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소싸움 경기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담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5) 「소싸움경기 시행규정」(청도공영사업공사 규정)

제72조 (조교사의 응원계약) ①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교사는 싸움소주인과 응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교사는 당해 경기에 출전하는 싸움소 주인과 응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경기의 승리수당은 공사에서 규정한 금액을 승리 시 싸움소 주인은 조교사에게 지급한다.

③ 공사는 규정 된 승리수당을 원천징수 후 조교사에게 지급한다.

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체 임원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5조의5제2호나목·제21조제1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라. (생략)	제5조의5(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라. (현행과 같음)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 4. (생략)	제21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의 특성상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가 중요하므로 현행 요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체 임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하여 파산자에게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먼저, 축산계열화사업체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등을 다시 출하받은 후 사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⁴⁶⁾으로, 사업의 특성상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중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제6조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⁴⁷⁾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

4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4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

여금 계약농가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⁴⁸⁾).

개정안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체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체와 계약 농가 간 거래 관계를 형성·유지함에 있어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계열화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게 이행하여야 한다.

4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계열화사업 관련 분쟁의 상당 부분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점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계약서 및 비용 지급과 같은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신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파산으로 인하여 개인 재무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분쟁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이해관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분쟁 당사자인 국민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인증·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제2호·제47조제1항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u>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	2. <u>인증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시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인증기관·공시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
해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농가가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유기농수
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2024년 10월 현재 48개소가 지정⁴⁹⁾되어 있음.

유기농어업자재⁵⁰⁾ 공시기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
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⁵¹⁾하고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4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enviagro.go.kr/portal/help/help_organism_list.do 참조

50)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함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현재 2개소⁵²⁾가 지정되어 있음.

현행 법률은 인증기관과 공시기관이 파산으로 인해 인증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인증·공시 기관이 파산할 경우 인증기관과 공시기관의 지정요건인 시설 및 장비 기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별표¹⁰⁵³⁾, 제75조제1항별표²²⁵⁴⁾)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5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5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53)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정실을 설치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을 것

나.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갖춰둘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감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감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감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54)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장비

가.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기관 및 공시기관이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바,

인증 및 공시기관이 파산한 경우 이 시설기준을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공시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파. 한국마사회법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1조제2항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주로 활동 시 경마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불이 어려워 조교사·말관리사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경마 운영의 안정성 저해 등 문제 발생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3) 검토 의견

마주는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⁵⁵⁾”로 한국마사회에 등록⁵⁶⁾ 후, 생산자로부터 말을 구매하여 조교사에게 위탁·관리하는 마필 수급과 한국마사회에서 공고하는 경주에 소유 경주마를 출전시켜 경주 결과에 따라 책정된 상금을 수령하는 개인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음.

【 경마 참여주체 역할 】

시 행 체	· 경마시행(발매운영) 및 상금 지급, 마주 등록, 조교사·기수면허 부여, 말 생산·육성지원 등
마 주	· <u>경주마를 구매하여 경주에 출전시키는 개인사업자</u>
생 산 자	· 경주용 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조 교 사	·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관 리 사	· 조교사에 고용되어 말 관리업무를 하는 근로자
기 수	· 조교사와 계약에 따라 경주에 기승하는 개인사업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10. 31.) 제출

개정안은 마주의 등록 요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게 초래되는 직업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경주마를 구매하고 위탁관리하게 하는 등 마주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재무적 여건(연소득 1억원 이상

5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6) 「한국마사회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법률적 요건), 경주마 구매 능력 및 위탁관리비 지불 능력을 갖추어야 함(경제적 요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한국마사회는 마주 등록 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마사회 방침⁵⁷⁾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마주등록 경제적 요건(마사회 방침 발췌) 】

구 분		세부 내용
개 인	내 국 인 (국내거주 외 국 인)	①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 평균 재산세 100만원 이상 ② 2년 평균 연소득 1.5억원 이상 ③ 2년 평균 재산세 300만원 이상 ④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7억원 이상 ※ 4개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외 국 인 (국 내 비 거 주)	① 해외 마주경력 1년 이상이고, ② 내국인을 마주활동 대행인으로 지정하고, ③ 2년 평균 연소득 USD 150,000 이상 혹은 최근 1년 금융자산 월 평균 잔액 USD 700,000 이상 ※ 3개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10. 31.) 제출

따라서, 마주의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재무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파산선고 채무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채무자를 삭제해도 사실상 마주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미복권

57)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자를 삭제할 경우 마주로 등록된 자가 향후 파산 시 경주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 재무상황이 불안정하여 공정성 담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
